

5.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5,685호 1998. 2. 24

주요 골자

- 가. 양도대상법인의 채무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이를 실비로 인정하도록 한 바, 그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양도·양수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양도·양수하는 경우로 함(령 제37조의5제1항).
- 나.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주등이 보유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이 이를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바, 이와같이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의 범위를 5년이상 계속 결손이 발생한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으로 함(령 제37조의7제1항).
- 다. 사업교환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에 대한 과세를 일정기간 이연하도록 한 바, 그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토지 및 건축물로 함(령 제37조의9).
- 라. 기업구조개선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한 바, 그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구조개선의 범위를 합병, 사업양도·양수 또는 기업인수의 경우로서 양도대금을 부채상환 또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사용하는 경우로 함(령 제37조의10제2항)
- 마. 합병을 통한 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함(령 제104조제1항).

개 정 이 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급히 요청되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감면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제6조제7항”을 “제6조제9항”으로, “제6조제5항”을 “제6조제7항”으로, “제6조제6항”을 “제6조제8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본문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사업자”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100분의50을”“100분의100”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5년이상”을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5년이상”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차입한”을 “직접 차입한”으로 한다.

2.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 것

제30조의2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33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공휴일인 경우
2. 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제37조의3제2항 전단중 “상환할 부채”를 “부채”로, “상환계획”을 “상환할 금융기관 부채의 총액·상환계획”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상환할 부채”를 “금융기관부채”로, “차입한”을 “직접차입한”으로 하며, 동조제3항 전단중 “상환할 부채”를 “상환할 금융기관부채”로, “부채총액”을 “금융기관부채총액”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부채총액”을 “금융기관부채총액”으로 한다.

제37조의3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8항 전단중 “채권금융기관”을 “다른 채권금융기관”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채권금융기관의”를 “다른 채권금융기관의”로 하고, 동조제9항중 “재무구조개선계획상 상환할 부채총액”을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 부채총액”으로 하며, 동조제11항제1호나목중 “부채”를 “금융기관 부채”로 하고, 동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40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의 시기로 본다.

⑬법 제40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0조의2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경과후에 재무구조개선법인의 부채상환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자구계획에 의한 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채상환예정액 또는 자구계획사용예정액에 의하여 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7조의3제1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

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0조의3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목의 세액

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

나.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세액이 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3. 법 제40조의3제2항제3호의 경우 : 면제세액 전액

제37조의3제16항을 내지 제21항을 각각 제17항 내지 제2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7항(중전의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⑯법 제40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⑰제1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말 현재 총리

령이 정하는 부채(이하 이 조에서 “부채”라 한다)를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법인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발생으로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을 말하며,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의3제18항(종전의 제17항) 후단중 “제16항”을 “제17항”으로하고, 동항제1호중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부채”로, “자기자본”을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부채의”를 “금융기관부채”로 한다.

제37조의3제20항(종전의 제19항)중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구조개선법인의 경우에는 주관금융기관(채권의 변제를 받은 채권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자구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이 연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서”로 하고, 동조제21항(종전의 제20항)중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부동산양도 후 1년이 되는 날

또는 자구계획이행일”을 “부동산의 양도일 또는 부채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자구계획이행일”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를 “과세표준신고시”로, “부채상환이행보고서”를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로 한다. 제37조의3제22항(종전의 제21항)중 “부채상환계획서 또는 자구계획이행계획서”를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자구계획서”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이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자구계획서 및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관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당해 법인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관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장이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의3에 제2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㉓ 금융기관으로 구성되는 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통된 승인기준, 절차, 서식제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장제5절에 제37조의5 내지 제37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5(법인양도·양수의 범위)①법 제40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업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총리령으로 100분의 50미만의 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②법 제40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양도는 하나의 법인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양도대상이 되는 주식을 일시에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③법 제40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 당해 양도대상법인 또는 주주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각호의1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40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호가목의 경우에는 양도대상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이하의 주식을 보유하던 자에 한한다)를 제외한다.

④법 제4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를 말한다.

⑤법 제40조의5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하면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발행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사전원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⑥법 제40조의5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양도대상법인이 증권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법인양도·양수일 전후 3월이내에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⑦법 제40조의5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협의회”라 함은 당해 양도대상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제37조의3제8항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성한 금융기관협의회를 말한다.

⑧법 제40조의5제1항제4호나목에서 규정에 의한 확인은 당해 법인양도·양수의 내용, 그 효과 및 향후 경영계획 등이 포함된 기업구조조정계획을 당해 법인양도·양수일전후 3월이내에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 경우 확인방법에 관하여는 제37조의3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법 제4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는 당해 주주가 단

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법인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에 한한다.

⑩제3항과 법 제40조의5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 주식수는 법인양도·양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37조의6(법인양도·양수에 대한 조세특례) ①법 제4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 또는 변제한 채무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인수 또는 변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각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결손금(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중 인수 또는 변제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 후의 각사업연도에 동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②법 제40조의5제2항의 산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

결손금 연도에 자산가액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에 가산한다.

②법 제40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

③제37조의3제7항의 규정은 법 제40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로서 최종 부불금의 수입일이 1999년 12월 31일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법 제40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양도대금중 199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받은 양도대금(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한다)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다.

④법 제40조의7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7조의2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법 제40조의7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7조의3제1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법 제40조의7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은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계획으로서 주주 등의 자산증여내용과 금융기관부채총액 및 내역, 상환계획을 명시한 것으로 하며, 자구계획은 주주 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사용계획을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⑦제37조의3제9항 및 제22항의 규정은 법 제40조의7제1항제2호 이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 및 법 제40조의7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적 등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제37조의3제17항 및 제18항의 규정은 법 제40조의7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⑨법 제40조의7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당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총리령이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9(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①법 제40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토지·

건축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②법 제40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가 없는 다른 내국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③법 제4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교환취득자산의 총리령이 정하는 시가(이하 이 항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개별 자산별로 토지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④제30조제6항의 규정은 법 제4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이연금액·이연취득가액 및

이연취득가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법 제40조의8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용고정자산의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총리령이 정하는 과세이연 신청서 및 자산교환명세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10(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①법 제40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아닌 기관으로서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제37조의3제1항 각호의 1의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기업을 말한다.

②법 제40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이라 함은 기업의 합병·인수 또는 사업양도·양수로 인하여 중복자산 또는 불용자산(이하 이 항에서 “중복자산등”이라 한다)이 되는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와 그 양도대금의 사용계획을 명시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당해 기업 또는 기업집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기업을 합병·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제한을 받는 경우

2. 사업용 부동산을 다음 각목의 1에 따라 양도할 것

가. 합병의 경우 :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복 자산등을 합병등기일 전후 6월 이내에 양도할 것

나. 사업양도의 경우 : 당해 기업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부문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일 것

다. 기업인수의 경우 : 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지배주주등이 아닌 자(당해 법인의 임원을 제외한다)가 일시에 인수하

여 경영권을 획득하고 기업인수일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부터 6월이내에 중복자산등을 양도 할 것

라. 사업양수의 경우 :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된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사업양수일부터 6월이내에 중복자산등을 양도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대금을 다음 각목의 1에 의하여 사용할 것

가. 당해 기업의 부채상환에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할 것

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 향상시설의 취득에 사용할 것

③법 제40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기업구조 조정계획에 따라 사용한 금액이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사업용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제2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 향상시설을 취득함으로써 사업용 부동산 양도일 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당해 사업용 부동

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구조조정사용계획서상의 사용예정액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법 제40조의9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37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하고 거주자의 경우에는 제30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한다.

⑥법 제40조의9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협의회는 주거래 금융기관과 다른 채권금융기관 중 당해 기업이 요구하는 금융기관으로 구성하거나 주거래 금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이 가장 많은 2개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한다.

⑦법 제40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할 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의9제2항제1호의 경우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
2. 법 제40조의9제2항2호의 경우 : 감면세액 전액
3. 법 제40조의9제2항제3호의 경우 : 제

37조의3제15항제2호·동조제17항 및 제1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

⑧법 제40조의9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1.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 법 제40조의3제2항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을 양도한 날
2. 제2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⑨법 제40조의9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7조의3제1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⑩제2항제3호가목 및 제8항에서 “부채”라 함은 타인(기업주·주주·임원 및 종업원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을 말한다.

⑪제37조의3제22항의 규정은 법 제40조의9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 조정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⑫법 제40조의9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리령이 정하는 기업구조 조정계획서
2. 총리령이 정하는 구조조정 사용명세서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사용액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에는 구조조정 사용계획서. 이 경우 기업구조 조정계획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사용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사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총리령이 정하는 구조조정 사용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제37조의3제7항의 규정은 법 제40조의9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9조제6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취득하는 주식등

제10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제41조제5항제1호”를 “제30조의2제7항제1호 또는 동항 제1호의2”로 한다.

①법 제1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합병일 현재 제37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업(이하 이 항에서 “부동산업등”이라 하며, 부동산업등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부동산업등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업 등을 5년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부동산업등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합병을 포함한다.

제107조제1호중 “법 제40조의2”를 “법 제

40조의3·법 제40조의9”로 한다.

- 부 칙 -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7조의3제17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연도가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등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